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발의연월일 : 2003. 09. 25

발 의 자 : 조기태 의원 외 6인

1. 수정이유

안 제4조에 단서를 신설한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보면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예를 들면, 65세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였을 경우에 67세까지 통장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, 또한 부칙 제2항의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문맥에 맞도록 정확하게 표현하여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골자

가. 통장의 임기 중 단서조항에 “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”를 “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”로 수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함(안 제4조).

나.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표현함.

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종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현 행	위원회 수정안	수 정 안
제2조(통·반의 조직)①(생략) ②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한다. ③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. 제4조(통장의 임기)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 설>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생략) ②통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 3.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제2조(통·반의 조직)①(현행과 같음) ②--6개반 내지 10개반----- ---. ③-- 20가구 내지 60가구로 --- ----- ----- --. 제4조(통장의 임기)----- -----. 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당해 임기까지는 보장하도록 한다.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<삭 제> <삭 제>	제2조(통·반의 조직)①(현행과 같음) ②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 ③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 제4조(통장의 임기)----- -----. 다만,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월의 말일에 당연 해촉된다.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 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 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
	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	부 칙 ①시행일(위원회 수정안과 같음) ②(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.